

# 철강대학원 학생조교 운영세칙

제정 2008. 9. 1      개정 2014. 9. 1  
개정 2013. 9. 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철강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조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학생조교의 임용) 대학원에서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학생을 학생조교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학생조교수당) 학생조교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되는 학생조교수당을 지급한다.

1. 학생교육조교수당(Teaching Assistantship)은 대학원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
2. 학생연구조교수당(Research Assistantship)은 대학원생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
3. 학생행정조교수당(Staff Assistantship)은 대학원생이 행정업무 지원(근로포함)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

제5조(학생조교수당 지급) ① (삭제: 2014.9.1)

② 학생조교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학기 중 자퇴,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일할계산 하지 않고 지도교수의 의견에 따라 해당 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학생조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학생연구조교수당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리규정을 우선적용하여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운영세칙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4.9.1)

제6조(초과등록자의 학생조교수당) ① 초과등록자라 함은 석사과정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8학기, 통합과정 12학기를 초과하여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개정: 2014.9.1)

② (삭제: 2014.9.1)

③ 초과등록자의 학생조교수당은 교비로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9.1)

제7조(장학금 지급의 제한) (삭제: 2014.9.1)

제8조(학생조교의 기타 재정지원의 수혜) ① 대학원생은 학생조교수당을 지급받는 동시

에 내·외부로부터 기타 장학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9.1)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이 학생조교수당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외부기관의 재정지원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9.1)

제9조(준용)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제5조(학기별 장학금 지급)은 2013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3년 1학기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